임 대 차 계 약 서

제1조(목적물)

자 동 차 등록번호	계약기간	~
차 종	임대금액	
차 명	위 약 금	
차대번호	비 고	

- 제1조(임차인의 자격) 임차인은 승용차는 만 21세 이상, 승합차는 만 30세 이상 으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- 제2조(대여요금) ①기본요금에는 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,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, 계약기간의 초과시 임대인은 별도의 초과시간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. ②임대차계약 시에 사용예정금액을 선납하며 차량 반납시에 최종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, 부대장비의 이용시 소정의 사용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
- 제3조(보험보상및차량사고) ①임대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차량의 보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한다.
 - ②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의 고의·과실에 의한 차량사고 발생시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,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휴차 보상료는 임차료의 70%로 하기로 한다.
- 제4조(교통법규) 임차기간동안 임차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임차인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.
- 제5조(연료및주행거리) 유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차량 반납 시에는 최초 대여 시부터 사용한 유류를 채워 반납하여야 하며, 주행거리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.
- 제6조(계약연장)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할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을 변상하여야 하며, 연장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20ㅇㅇ년 ㅇ월 ㅇ일

임대인	주	소				
	성	명	인 주민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
임차인	주	소				
	성	명	인 주민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